

2026 박문각 감정평가사 백운정 민법 1차 문제집 (제7판 정오표)

페이지	변경부분	수정
333p	정답 01 ③	01 ③, ⑤
334p	정답 해설 ⑤ 해설	<p>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전) 2025. 7. 24. 2023다240299). 소멸시효 완성 후 중단으로서의 채무승인을 넘어 불리한 법적 결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가 있어야 시효이익의 포기를 할 수 있다.</p>
335p	정답 해설 ⑤ 해설	<p>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전) 2025. 7. 24. 2023다240299).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 법리"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는 개별적이고 엄격한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추정 법리를 사용한 법적 판단이 아닌 개별 사건마다 세부적인 사정 고려와 구체적 사실 심리를 통해 시효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여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p>
335p	정답 04 ④	04 ④, ⑤
338p	정답 해설 ③ 해설	<p>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전) 2025. 7. 24. 2023다240299). 따라서 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500만 원을 갚은 경우,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p>
339p	정답 01 ⑤	01 ③, ⑤
637p	비교 두번째	공용징수 → 협의수용: 제186 적용. 이전등기 하여야 소유권취득

2026 박문각 감정평가사 백운정 민법 1차 필수 암기장 (제4판 정오표)

p. 45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권리소멸	기산일로 소급효
주장 요부	변론주의 적용(주장 필요) ※ 소멸시효 ┌ 기산점 : 변론주의 대상 ○ └ 기간 : 변론주의 대상 ×, 직권 판단
주장자	직접 이익 받는 자 ┌ 물상보증인, 담보물권의 제3취득자 ○ (원용권자) └ 채무자의 일반채권자 ×
완성 후 변제	알고 변제한 것으로 추정 → 제742조, 제744조에 의해 유효한 변제가 됨 ↳ 판례 변경 추정 ×
시효이익 포기	완성 후 포기 가능

■ 시효이익의 포기

성질	처분행위 → 효과의사 ○ ┌ 처분능력, 처분권한 ○ └ 시효완성사실을 알고서 하여야 함 → 알고 포기한 것으로 추정(判) ↳ 판례 변경 추정 ×
방법	1. 당사자 : 당사자 or 대리인에 한정 → 상대방 : 진정한 채권자 2. 묵시적 : ① 일부변제 ┌ 액수에 다름이 없는 한 채무 전체 승인 ┌ 법원의 └ 가분채무에 일부 포기 가능 └ 권리포기의 의사확인 필요 ② 기한유예의 요청 └
사전 포기 금지	사후 포기 가능
효과	상대적 효력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 보증인 ×, 물상보증인 ×, 제3취득자 ×